

[별표 1]

기 술 검 토 비 용

1. 신규기술검토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 설 별	제조능력 · 저장능력	비 용
액화가스의 제조 · 저장 · 충전시설	5톤 이하	4만 6천원
	5톤 초과 10톤 이하	6만 7천원
	10톤 초과 20톤 이하	8만 8천원
	20톤 초과 50톤 이하	12만 3천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18만 5천원
	100톤 초과 500톤 이하	30만 8천원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45만 1천원
	1천톤 초과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시 설 별	제조능력 · 저장능력	비 용
압축가스의 제조 · 저장 · 충전 시설	1천m ³ 이하	5만 7천원
	1천m ³ 초과 2천m ³ 이하	10만 2천원
	2천m ³ 초과 3천m ³ 이하	13만원
	3천m ³ 초과 5천m ³ 이하	16만원
	5천m ³ 초과 1만m ³ 이하	31만 1천원
	1만m ³ 초과 10만m ³ 이하	49만 9천원
	10만m ³ 초과 20만m ³ 이하	70만 7천원
	20만m ³ 초과 50만m ³ 이하	89만 1천원
	50만m ³ 초과 100만m ³ 이하	110만 2천원
	100만m ³ 초과	<p>110만 2천원에 100만m³를 초과한 10만m³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시 설 별	냉동능력	비 용
냉동제조시설	5톤 이하	1만 2천원
	5톤 초과 10톤 이하	2만 3천원
	10톤 초과 30톤 이하	5만 5천원
	30톤 초과 50톤 이하	8만 5천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13만 9천원
	100톤 초과 200톤 이하	21만 7천원
	200톤 초과 300톤 이하	28만 5천원
	300톤 초과 500톤 이하	35만 8천원
	500톤 초과	<p>35만 8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3만 3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2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p>

시 설 별	능 력 별	비 용
배 관	연장 1km이하	7만 8천원
	연장 1km초과 2km이하	16만원
	연장 2km초과 3km이하	22만 8천원
	연장 3km초과 4km이하	29만 7천원
	연장 4km초과 5km이하	35만 5천원
	연장 5km초과	35만 5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1km마다 6만원을 가산한 금액.
용 기 제 조 시 설		17만 6천원
냉 동 기 제 조 시 설		17만 6천원
특정설비제조시설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81만 2천원
	기 타	17만 6천원
검 사 기 관 시 설		11만 5천원
관 매 시 설		4만 3천원
고 압 가 스 수 입 업		4만 3천원
고압가스운반자의 등록 대상차량 (1대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	4만 3천원
용기운반자의 등록 대상차량 (1대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차량	1만 2천원
등록대상 용기 등의 종류구분(별표2)	용기 4종류 이상	516만원
	기 타	368만 7천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 설 별	저 장 능 력	비 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소 시설 및 사용시설	5톤 이하	4만 6천원
	5톤 초과 10톤 이하	6만 7천원
	10톤 초과 20톤 이하	8만 8천원
	20톤 초과 50톤 이하	12만 3천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18만 5천원
	100톤 초과 500톤 이하	30만 8천원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45만 1천원
	1천톤 초과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27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가 스 용 품 제 조 시 설		17만 6천원
판 매 시 설		4만 3천원

다. 도시가스사업법

시 설 별	제조능력 · 저장능력	비 용
액화가스의 충전시설	5톤 이하	4만 6천원
	5톤 초과 10톤 이하	6만 7천원
	10톤 초과 20톤 이하	8만 8천원
	20톤 초과 50톤 이하	12만 3천원
	50톤 초과 100톤 이하	18만 5천원
	100톤 초과 500톤 이하	30만 8천원
	500톤 초과 1천톤 이하	45만 1천원
	1천톤 초과	45만 1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시 설 별	제조능력 · 저장능력	비 용
압축가스의 충전시설	1천m ³ 이하	5만 7천원
	1천m ³ 초과 2천m ³ 이하	10만 2천원
	2천m ³ 초과 3천m ³ 이하	13만원
	3천m ³ 초과 5천m ³ 이하	16만원
	5천m ³ 초과 1만m ³ 이하	31만 1천원
	1만m ³ 초과 10만m ³ 이하	49만 9천원
	10만m ³ 초과 20만m ³ 이하	70만 7천원
	20만m ³ 초과 50만m ³ 이하	89만 1천원
	50만m ³ 초과 100만m ³ 이하	110만 2천원
	100만m ³ 초과	110만 2천원에 100만m ³ 를 초과한 10만m ³ 마다 13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공 사 내 용	비 용
시 설 별	공사 부분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 자외의가스공 급시설설치자 포함)제조소	1. 설치 공사	제조소 신규설치	201만원
	2. 변경 공사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	100만 4천원
		가스발생설비 및 부속설비	100만 4천원
		기타 부대설비	100만 4천원
일반사업 제 조 소	1. 설치 공사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제조소의 설치공사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것	
		가. 가스제조능력이 5만m ³ 미만인 것	26만 1천원
		나. 가스제조능력이 5만m ³ 이상인 것	31만 7천원
	2. 변경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가. 가스제조능력이 40만m ³ 미만인 것	58만 7천원
		나. 가스제조능력이 40만m ³ 이상인 것	73만 9천원
		1. 제조설비(가스발생설비와 그 가스 발생설비와 일체가 되어 가스의 제 조용에 사용되는 가스정제설비·가 스홀더·배송기·압송기 및 그 부 대설비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 치공사	

대 상		공 사 내 용	비 용
시 설 별	공사부분		
		가.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22만 6천원
		나.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18만 4천원
		2. 제조설비 설치공사외의 변경공사	
		가.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공사	27만 1천원
		나. 가스정제설비에 속하는 공사	27만 1천원
		다. 가스홀더에 속하는 공사	18만 4천원
		라. 배송기 및 압송기에 속하는 공사	13만 6천원
	마. 부대설비에 속하는 공사	13만 6천원	
공 급 소	설치공사	공급소에 속하는 설치공사	22만 6천원
	또는 변경공사	공급소에 속하는 변경공사	18만 4천원
정 압 기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정압기의 설치공사 또는 정압기의 변경공사	8만 5천원
정압기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정압기지의 설치공사	20만 4천원
		정압기지의 변경공사	16만 8천원

대 상		공 사 내 용	비 용
시 설 별	공사부분		
배 관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가. 연장이 2km미만인 것 나. 연장이 2km이상 10km미만인 것 다. 연장이 10km이상인 것	3만 8천원 10만 2천원 10만 2천원에 10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3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가. 연장이 5km미만인 것 나. 연장이 5km이상인 것	40만 2천원 40만 2천원에 5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7만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대 상	비 용
특정가스사용시설 1. 월사용예정량이 4천 ^m 이하인 것	2만 3천원
2. 월사용예정량이 4천 ^m 초과인 것	2만 3천원에 4천 ^m 를 초과한 500 ^m 마다 3천 4백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비 용
3. 매립 배관시설 <신설 2014.8.4>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2만 3천원 2만 3천원(세대 면적형별)

2. 변경 기술검토

변경기술검토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허가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변경능력 부분에 대한 비용 징구

나. 허가능력에 관계없는 저장탱크 및 처리설비등이 증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는 동 설비의 능력을 기준한 비용을 징구하되, 그 금액이 기존 시설의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허가받은 능력에 대한 비용 징구

다. 위의 가.목 및 나.목의 변경이 함께 되는 경우는 가.목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가.목의 비용만 징구

라. 위의 가.목 및 나.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변경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비용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징구. 다만, 용기등 제품제조시설은 기존 허가능력에 따른 비용을 징구한다.